

# 시립마포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181
----------	------

2023년 9월 15일  
행정자치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
- 나. 제출일 : 2023년 8월 14일
- 다. 회부일 : 2023년 8월 21일
- 라. 상정일 : 제32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023년 9월 13일 상정·의결(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구종원 평생교육국장)

#### 가. 제안이유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인 시립마포청소년센터의 위탁기간이 2023. 12. 31. 만료 예정에 따라,
-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소년센터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나. 주요내용

1) 위탁사무명 : 시립마포청소년센터 운영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18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8조, 제11조

○ 추진의 필요성

- 시립마포청소년센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시설로,
- 진로직업·창의적 체험활동 등 청소년센터를 이용한 학교연계 수업과 방과 후 활동 등 청소년에 대한 높은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청소년 요구에의 적절한 대응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해 청소년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고 있음.
- 또한 청소년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고, 청소년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하며 현장 경험이 많은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5) 민간위탁기간: 3년(2024.1.1 ~ 2026.12.31.)

6)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4,300백만원(2023년)

○ 산출근거

- 인건비 1,387백만원, 운영비 943백만원, 사업비 1,889백만원, 사업외지출 및 기타 81백만원

8)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2023년 예산 반영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 가. 민간위탁 동의안의 개요

-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총 4건(재위탁 4건)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새로운 청소년 단체를 선정하여 청소년시설을 민간에 재위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 〈 제320회 임시회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의 개요 〉

의안번호	시설명	구분	위탁동의안 개요
1181	시립마포청소년센터	재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li> <li>- 개관일자 : 2008.11.1.</li> <li>- 시설규모 : 부지2,286.25㎡/건물5,208.74㎡</li> <li>- 위탁기간 : 3년(2024.1.1~2026.12.31.)</li> <li>- 선정방식 : 공개모집</li> <li>- 소요예산 : 4,300백만원(2023년)</li> </ul>
1182	시립문래청소년센터	재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로 110</li> <li>- 개관일자 : 1987.4.14.</li> <li>- 시설규모 : 부지 2,314㎡ / 건물 5,611㎡</li> <li>- 위탁기간 : 3년(2024.1.1 ~ 2026.12.31.)</li> <li>- 선정방식 : 공개모집</li> <li>- 소요예산 : 5,560백만원('23년)</li> </ul>
1183	시립화곡청소년센터	재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재지 : 서울시 강서구 곰달래로57가길 26</li> <li>- 개관일자 : 2009.04.01.</li> <li>- 시설규모 : 부지 1,647㎡ / 건물 5,024㎡</li> <li>- 위탁기간 : 3년(2024.1.1 ~ 2026.12.31.)</li> <li>- 선정방식 : 공개모집</li> <li>- 소요예산 : 2,087백만원('23년)</li> </ul>
1184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재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재지 :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61</li> <li>- 개관일자 : 1999. 5.</li> <li>- 시설규모 : 부지 252.72㎡ / 건물 252.72㎡</li> <li>- 위탁기간 : 3년(2024.1.1 ~ 2026.12.31.)</li> <li>- 선정방식 : 공개모집</li> <li>- 소요예산 : 1,088백만원('23년)</li> </ul>

-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사무 중 일부를 민간(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기관·개인 등)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아래 위탁 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민간위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며,
  - 민간위탁 관련 조례는 행정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경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기에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회의 동의 후 6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 운영의 투명성 훼손 및 민간단체의 부속시설화 등을 방지하고, 민간위탁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위탁사무의 적정성, 경제적 효율성, 성과의 효과성, 사업의 공공성, 전문성 확보 여부, 공공서비스의 지속 가능성, 경쟁력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 금번 제출된 청소년시설 4개소 모두 2023년 12월 31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재위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이가 필요한 상황인바,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성과, 재위탁의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의(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시설형'과 '사무형' 구분

- 시설형 위탁 : 행정재산(서울시 소유시설, 전세권 설정한 임차시설 등)의 관리와 해당 시설을 활용한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
- 사무형 위탁 : 행정재산의 관리를 수반하지 않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

※ 재계약 및 재위탁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2조(정의)]

- 재위탁: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
- 재계약: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

※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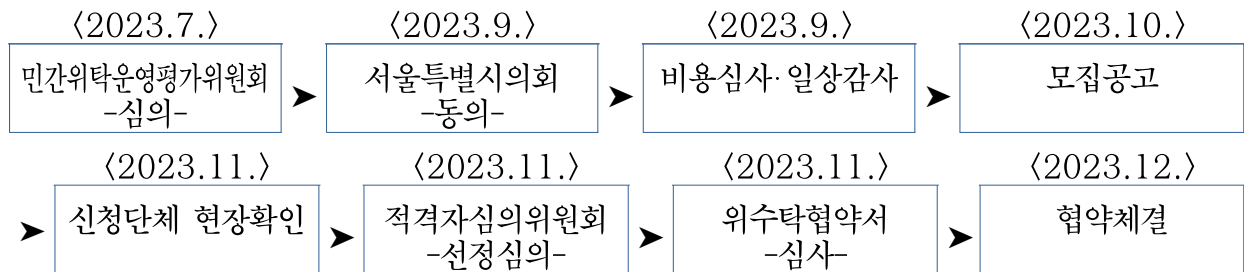
- 청소년시설은 청소년 활동·복지·보호에 제공되는 시설로, 법률(「청소년 기본법」제18조제3항)이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게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유는 청소년시설의 설립목적에 맞는 전문성과 책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 평생교육국은 청소년단체(법인)의 전문성과 경험 등 활용하여, 청소년들에게 다양하고 우수한 청소년시설의 프로그램(청소년 활동·교류·문화·교육·상담 등)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밝히고 있어, 법률의 취지와 평생교육국의 목적(청소년시설 운영의 전문성 확보)이 같은 것으로 보여, 청소년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의 추진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 「청소년 기본법」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평생교육국은 서울특별시의회 동의(9월) 후 10월 모집공고, 적격자심의위원회(11월)를 거쳐 새로운 청소년단체(수탁기관)을 선정(12월)하고, 2024년 1월부터 민간위탁 방식으로 해당 청소년시설을 운영할 예정에 있음.



- 민간위탁을 규율하는 조례는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에 한정하여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동의안들의 위탁사무는 권리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없이, 청소년들에게 전문지식이나 경험 등을 활용하여 청소년 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제공·지원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여짐.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나. 동의안 검토

- 본 동의안은 '학교법인 명지학원 명지전문대학(이하 '명지학원')'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립마포청소년센터(이하 '마포청소년센터')의 위탁이 만료(2023.12.31.)될 예정으로, 새로운 청소년단체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본 시설을 3년간 (2024.1.~2026.12.) 재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 시립마포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개요 >

- 위탁사무명 : 시립마포청소년센터 운영
- 위탁 사무 내용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 활동 사업
  -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 상담사업
  -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지원사업
  - 청소년센터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그 밖에 청소년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
- 개관일자 : 2008.11.1.
- 시설규모 : 부지 2,286.25㎡ / 건물 5,208.74㎡
- 주요시설 : 방송문화콘텐츠공작소, 청소년자유공간, 방과후아카데미, 수영장, 체육관, 소극장, 프로그램실 등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 민간위탁기간: 3년(2024.1.1 ~ 2026.12.31.)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소요예산 : 4,300백만원('23년)
- 산출근거
  - 인건비 1,387백만원, 운영비 943백만원, 사업비 1,889백만원, 사업외지출 및 기타 81백만원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마포구청 내 위치한 마포청소년센터는 청소년의 활동(체험·문화·교류 등) 제공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시설로,
  - 평생교육국은 청소년활동단, 청소년참여플랫폼, 학교 연계 프로그램, 방과 후 활동, 청소년자유공간 등 청소년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식이 요구되며,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 등을 민간위탁 추진의 필요성으로 제출하고 있음.
  
- 마포청소년센터는 2008년 이후 현재까지 15년간 명지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하2층 지상4층의 시설로, 2023년 현재 30명(정규직23명, 비정규직 7명)의 직원이 44억 7천만원(민간위탁금 6억 8천 5백만원 포함)의 예산으로, 18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시립마포청소년센터 위치도 〉



〈 시립마포청소년센터의 시설 사진 〉



시설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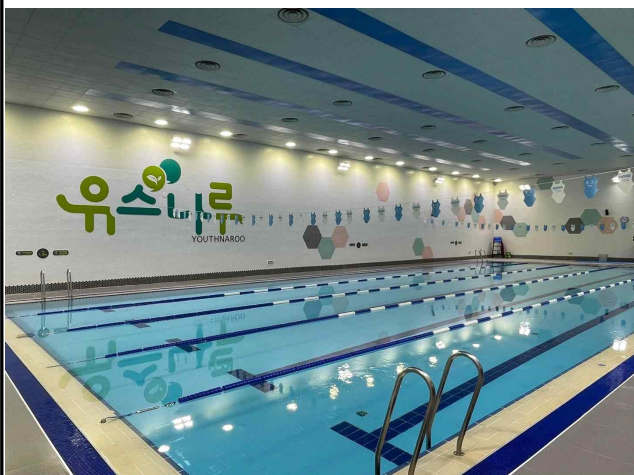
방송문화콘텐츠공작소(미디어특성화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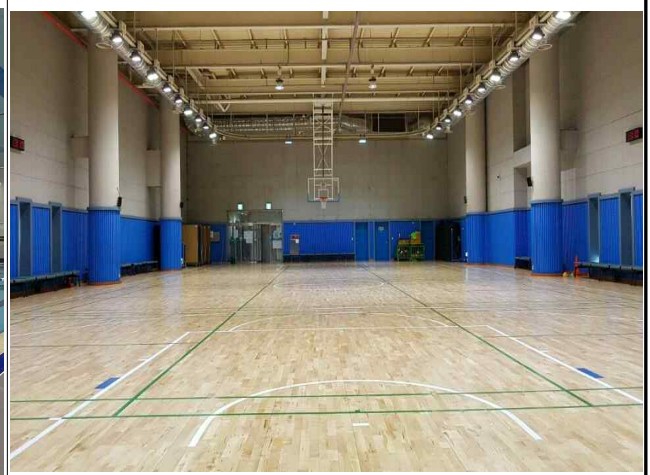
청소년 자유공간



청소년 전용공간



수영장



체육관

〈 2023년 시립마포청소년센터 인력현황 〉

(단위:명)

구분	총계	정규직										비정규직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기능	고용	소계	계약	기타
정원	28	28	1	1	1	3	4	10	6	0	2	0	0	0
현원	30	23	1	0	1	4	5	11	1	0	0	7	7	0

〈 최근 3년간 '시립마포청소년센터 총 예산' 및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

(단위:천원)

구분	센터 총 예산		민간위탁금	
	예산	결산	예산	결산
2023년 7월 기준	4,300,000	1,767,986	745,000	528,269

〈 2023년 시립마포청소년센터 사업현황 〉

(단위:개)

구분	계	영역별 프로그램				시설사용	특별지원	기타
		교육문화	목적	생활체육	상담지도			
마포	186	50	70	46	1	6	11	2

〈 시립마포청소년센터 운영경과 〉

- 2008.10.01. ~ 2011.10.31. : 신규 (학)명지학원명지전문대학
- 2011.11.01. ~ 2013.02.20. : 재계약 (학)명지학원명지전문대학
- 2013.02.21. ~ 2013.12.31. : 계약연장 (학)명지학원명지전문대학
- 2014.01.01. ~ 2016.12.31. : 재위탁 (학)명지학원명지전문대학
- 2017.01.01. ~ 2018.12.31. : 재계약 (학)명지학원명지전문대학
- 2019.01.01. ~ 2021.12.31. : 재위탁 (학)명지학원명지전문대학
- 2022.01.01. ~ 2023.12.31. : 재계약 (학)명지학원명지전문대학

- 평생교육국은 마포청소년센터에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 청소년과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고, 지역·시설 등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사업추진 및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민간위탁 추진사유를 제출하고 있음,

- 마포청소년센터는 2023년 총 39만명(총 이용객 50만명) 청소년 이용을 목표로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23년 시립마포청소년센터의 사업분야별 목표 인원 〉

(단위:천원)

구분	목 표			
	총계	유아	청소년	성인
합계	508,762	5,377	388,388	11,4997
교육문화사업	120,590	0	97,811	22,779
생활체육사업	277,128	3,600	186,642	86,886
목적 사업	67,002	0	67,002	-
특별 사업	26,266	0	26,266	-
대관 및 기타사업	17,776	1,777	10,667	5,332

- 청소년은 통상 9세에서 24세의 사람이나, 이중 정신적·신체적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청소년(후기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활동 진흥 정책을 시행하고, 청소년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이나,
  - 마포청소년센터의 프로그램 구성현황(2023년 9월 기준)을 보면 목적사업은 2개 프로그램(한국사 수업, 토요역사수업) 뿐이며, 대부분 생활체육 사업과 교육문화 사업으로 편중되어 있으며,
  - 교육문화 사업 중 체육활동(요가, 필라테스 줌바댄스 라인댄스, 에어로빅, 다이어트 댄스)은 성인 위주의 사업으로 구성하고, 청소년대상 사업은 자기표현(국어, 논술), 세계화(중국어, 영어 등), 과학(로봇, 체스 등), 음악·감성(보컬레슨), 악기(피아노(모차르트, 베토벤, 쇼팽 등) 등) 등의 분야로 구분하고 있으나,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어, 정작 청소년 중 집중해야 할 대상 사업은 매우 적은 것으로 보임.

- 마포청소년센터는 청소년이 참여 불가능한 시간에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성인 프로그램의 수강료에 청소년과 성인의 수강료를 별도 표기하여 청소년프로그램으로 계수하고 있는바,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전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확대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023년 9월 마포청소년센터의 청소년 프로그램 〉

프로그램	대상	요일	시간	수강료
아침수영06A	성인 및 청소년 (중학생 이상)  *성인 부가세 10% 별도	월/수/금	06:00~06:50	45,800
아침수영06B		화/목		36,800
아침수영07A		월/수/금	07:00~07:50	45,800
아침수영07B		화/목		36,800
아침수영08A		월/수/금	08:00~08:50	45,800
오전수영09A		월/수/금	09:00~09:50	45,800
오전수영10A		월/수/금	10:00~10:50	45,800
오전수영10B		화/목		36,800
오전수영11A		월/수/금	11:00~11:50	45,800

프로그램	대상	요일	시간
아쿠아로빅08B	성인 및 청소년 (중학생 이상)  *성인 부가세 10% 별도	화/목	08:00~08:50
아쿠아로빅09B			09:00~09:50
아쿠아로빅11B			11:00~11:50
아쿠아로빅12B			12:00~12:50
아쿠아로빅12A		월/수/금	12:00~12:50
아쿠아로빅13B		화/목	13:00~13:50
아쿠아로빅21B			21:00~21:50

프로그램	대상	요일	시간	수강료
파워에어로빅09A	성인 및 청소년 (중학생 이상)	월/수/금	09:00~09:50	50,000
줌바댄스10A			10:00~10:50	
다이어트 댄스12B		화/목	12:00~12:50	
다이어트 댄스14B		수/금	14:00~14:50	
줌바댄스19B		화/목	19:00~19:50	

출처 : 시립마포청소년센터 홈페이지(수강신청) 및 '9월 프로그램 안내 전단지'

- 마포청소년센터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청소년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으나, 이를 활용한 프로그램의 확대·강화 등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시간의 제약이 많은 청소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프로그램은 매우 적은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 현재 청소년활동 제공 방법이 오프라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온라인·오프라인 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병행 등 청소년활동 제공수단의 확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 프로그램만 다양화 뿐만 아니라 제공 방식의 다양성 확보 등을 위하여 이를 추진할 능력이 있는 수탁기관이 선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명지학원은 마포청소년센터를 개관할 때부터 운영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사항에서 매년 지적이 반복되고 있는바, 장기간 변화없는 환경에 의해 타성으로 시설운영 및 목적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 장기간 수탁으로 본 시설에 대한 전문성이나 노하우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새로운 환경 또는 여건 변화에 대응은 익숙한 만큼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장기수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단점 등을 해소하기 위한 신규 수탁기관의 선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최근 3년간 시립마포청소년센터 지도점검 결과

- 2022.06.14. 업무추진비 지출결의서 작성 미흡
- 2022.06.14. 개인정보 포함된 전자결재 보안설정 처리 미흡
- 2021.04.12. 업무추진비 집행 지출결의서 기한 미준수
- 2020.08.20. 인사위원회 운영 및 서류심사계획 누락
- 2020.08.20. 재물조사계획서 내 세부사항 미흡

- 한편,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변화를 인지하여, 그에 맞는 프로그램과 전달 방식을 활용할 수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하나, 평생교육국은 기본적인 사항(재정능력, 전문성 등)을 기준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있어, 선정기준의 보완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 기존 수탁기관은 장기수탁으로 인해 현상유지를 위한 시설관리에 집중하고 있어, 시설과 설비의 유지뿐만 아니라 발전·개선 등의 의지가 있는 새로운 우수법인의 접근성 강화 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다. 종합검토

- 서울특별시는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해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에게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성을 확보한 단체에 위탁하여 효과를 높이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이나,
  - 청소년의 특징과 성장환경 및 생활방식의 변화에 따라 공공서비스(수련·문화·예술·스포츠·교류·교육·동아리활동 등) 제공방식의 변화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청소년시설의 조직구조 및 인력구성 등도 이에 맞춘 개선과 보완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서울특별시가 본 사무(청소년활동 진흥)를 민간에 위탁한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특정 단체가 특정 기관을 장기 수탁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장점(능력있는 단체의 안정적 운영) 뿐만 아니라 단점(일상화로 인한 효율성·효과성·투명성 저하, 혁신부재 등)도 부각되고 있는바, 개선과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있는 새로운 단체의 진입을 촉진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청소년시설에서 유아 및 성인 대상 프로그램을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으로 계승하고, 유아스포츠단과 같은 비인가 교육활동 추진 등을 지속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 청소년시설이 프로그램을 변형(유아·성인 대상 프로그램의 청소년 프로그램화)하는 이유는 여성가족부의 기준(청소년 이용률이 최소 60% 이상 유지) 준수와 부족한 운영비 마련(총 운영비의 약 20% 내외인 민간위탁금) 등으로, 부족한 운영비를 자력 충당하는 동시에 ‘청소년 사업을 확대·강화’하는 것으로 평가받아야 지속적인 수탁(시설의 운영)이 가능한 상황임.

- 이러한 문제는 대부분의 시립청소년시설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평생교육국은 ‘예산의 효율과 지역 기여의 문제’(민간위탁금을 충분히 편성하면 서울특별시의 재정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의 적극성이 떨어지고, 민간위탁금을 적게 편성하면 수익 사업에 집중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나 지역 기여에 도움이 될 수 있어 적절한 균형이 필요)로 인식하고 있으나,
  - 청소년시설 설치 목적의 왜곡(청소년활동→지역기여), 주요 이용대상의 변경(청소년→유아/성인), 위탁기관의 운영 목적의 변질(청소년활동 진흥→운영비 마련) 등 청소년시설에서 주객전도의 상황을 고려할 때, 본 사안은 ‘지역기여와 청소년활동 간 균형의 문제’가 아닌 ‘청소년활동에 대한 지원의 충분성과 예산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학교 수업시간으로 청소년 이용이 적은 시간대에 지역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시설 활용성을 높이는 일이나, 운영비 확보를 위해 지역 기여 사업을 확대(성인 및 유아 대상 프로그램 주류)하는 것은 청소년의 이용을 제약(청소년 프로그램의 축소 및 기타 이용대상을 위한 프로그램 증가)하게 하는바, 청소년시설의 프로그램 편성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음.
  
- 청소년시설은 운영비 마련에 급급하여 사실상 지역 문화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청소년시설의 역할·기능의 재정립 없이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 청소년시설의 설치 목적에 따른 기능회복을 위한 대안 마련 후 효율적 운영방식의 선택(직영, 민간위탁, 자치구 위임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시립마포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181
----------	------

제출년월일 : 2023년 8월 14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 1. 제안이유

- 가.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인 시립마포청소년센터의 위탁기간이 2023. 12. 31. 만료 예정에 따라,
- 나.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소년센터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시립마포청소년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제11조(협약체결 등)

## ○ 추진의 필요성

- 시립마포청소년센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시설로,
- 진로직업·창의적 체험활동 등 청소년센터를 이용한 학교연계 수업과 방과 후 활동 등 청소년에 대한 높은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청소년 요구에의 적절한 대응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해 청소년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고 있음
- 또한 청소년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따라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고, 청소년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하며 현장 경험이 많은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 위탁 사무 내용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사업
-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 상담사업
-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지원사업
- 청소년센터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그 밖에 청소년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라.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
- 개관일자 : 2008.11.1.
- 시설규모 : 부지 2,286.25㎡ / 건물 5,208.74㎡
- 주요시설 : 방송문화콘텐츠공작소, 청소년자유공간, 방과후아카데미  
수영장, 체육관, 소극장, 프로그램실 등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 위치도



마. 민간위탁기간: 3년(2024.1.1 ~ 2026.12.31.)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4,300백만원('23년)

- 산출근거

- 인건비 1,387백만원, 운영비 943백만원, 사업비 1,889백만원,  
사업외지출 및 기타 81백만원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8조(수탁기관 선정), 제11조(협약체결 등)

-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11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노동자에 대한 고용·노동조건 개선노력
  6.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작성자 :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시설팀 김유진(☎2133-4121)